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지침

시행일 : 2019. 03. 01.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산출기준에 의한 엄정하고 공정한 학업평가 및 성적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의 기본의무)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성적을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학업평가의 방법)

- ① 학업평가의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구과제물, 발표 및 토론, 실험·실습, 수업참여도, 퀴즈, 출결등으로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담당교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결 및 수업참여도는 전체 성적에서 20%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을 치르는 경우 필기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및 출제방식은 적어도 1 주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다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교과목유형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두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구두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및 출제방식은 적어도 1 주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그 외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평가방법을 담당교원이 선택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 내규 제 35 조에 의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공시된 필기시험이나 구두시험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추가시험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이 질병 등 불가항력으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 하였고 담당교수가 해당 내용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생이 응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차를 미응시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응시한 시험의 동일 점차가 취득한 점수(타 수강생의 취득점수)의 80%를 미응시한 시험의 점수(절대값)로 인정한다.

제 4 조 (학업평가방법의 명시)

- ① 담당교원은 학업평가의 방법을 수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수업계획서에 명기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학업평가의 방법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담당교원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적절한 비율로 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학업평가의 공정성확보 등)

- ① 학업평가의 기준이 특정평가기준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되며, 적어도 동 지침 제 3 조 제 1 항에서 예시하는 방법 중 5 개 항목 이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평가요소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평가항목별 배점은 상이할 수 있으나, 특정항목에의 배점이 40%이상으로 집중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험의 방식이 아닌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나, 시험방식의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은 시험 후 3 일 이내에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한다.

제 6 조 (평점부여)

- ① 학업평가에 의한 평점 부여는 본 대학원 내규 제 34 조에 의하여 규정된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이 준수되어야 하며, A+부터 D 에 이르기까지의 10 단계와 F(불량)의 등급으로 세분하여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실습과목과 실무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P/N/I(합격/불합격/미완)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해당과목의 담당교원은 본 대학원 내규 제 34 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 37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7 조 (성적처리 및 결과의 공시 등)

- ① 학업평가에 있어서는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학업성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원칙적으로 시험이 실시된 후 3 일 이내에 학업평가의 구체적 기준(모범답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이 실시된 후 10 일 이내에 성적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의 열람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하며, 수강생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교원 수는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학기말 최종성적은 기말고사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원이 직접 전산입력하고 학사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기말 최종성적이 제출된 이후 1 주일간의 열람기간을 두며, 열람기간이 종료한 후 1 주일 이내에 수강생은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8 조 (이의신청 및 청원)

-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 39 조 제 4 항 및 본 지침 제 7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학생은 최종결과가 제출된 이후의 성적열람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처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이의신청가능 기간은 열람기간 종료 이후 1 주일 이내로 하며, 담당교원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 제 7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가 최종결과에 명백히 반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수강생은 학사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청원가능기간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로 한다.
- ④ 학사운영위원회는 당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제 3 항의 청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교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본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